

## FSS/2311-09 :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2022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동차 전장용(오디오, 정션박스 등) 및 통신용(시스템, 무선, IOT 등)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다. PCB는 거래처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주문제작되고 있었다.

'20년 중 회사의 주요 거래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부족 등으로 이미 발주한 물량을 축소하거나 취소하였다. 이로 인해 회사는 특정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해 제작한 제품을 팔지 못하고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회사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일부 품목은 제조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었다.

회사는 '20년말 및 '21년말 재고자산 평가시 실제 판매가격이나 판매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기말 보유 재고자산 중 취득(제조완료)시점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경과기간별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었다.

###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시 일부 품목의 장부가액이 실제 판매가격 보다 높았음에도 동 차액을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특정 거래처에 맞춤용으로 제작된 제품의 납품중단·취소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9, 28, 30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며, 진부화되거나 판매가격이 하락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는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기말 보유 재고자산 평가시 실제 판매가격이나 판매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보유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한 회계처리는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4. 시사점**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 평가시 시장 여건, 장기체화 여부, 실제 판매가격 및 판매가능 여부 등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보고기간 후의 판매가격 추이, 재고자산의 단위당 제조원가 상승 등 순실현가능가치의 하락 요인이 있는지를 보고기간 말마다 검토해야 하며, 비합리적 가정 또는 낙관적인 평가에 의해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